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제정 1989. 6. 1.(규칙 제 81호)
5차 변경 2010.12.21.(규칙 제541호)

제 1 조(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 2 조(피선거권 자격기준) 정·부회장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사상이 건전하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 ②본 대학에 1년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③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단, 대의원은 B학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 C학점 이상인 자)
- ④체육학과는 경기실적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단, 경기입상실적중 개인전과 단체전이 모두 있는 종목의 단체전 성적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인정된 세부종목에 한한다.
- ⑤학칙에 의거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 3 조(선거방법) ①학생회 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체육학과는 부별 주장을 대의원으로 하되, 남·여 등 팀이 달리 운영되는 경우는 따로 구성하며, 그 외의 학부(과)는 학부(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 4 조(임기) 정·부회장 및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매 년도 1년으로 하되, 재임중 근신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선출시기) 정·부회장 및 각종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전에 선출하고 대의원 및 대의원회의 정·부회장은 전임 학생회장의 임기만료 15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 6 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에서 부담한다.
- ③위원회는 학생과장과 학생지도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의 학생지도위원,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의 정·부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과장이 된다.

④기능

1.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벽보 및 선전문에 관한 사무
4. 투·개표에 관한 사무
5. 당선·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

⑤권한

1. 위원회에서 행사하는 선거 절차상의 행위는 개회, 성원, 공포 등 합법적인 권한으로 인정한다.
2. 선거 절차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 진행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제 7 조(입후보등록) 학생회 회장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소속부(과) 지도교수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해당학기 이전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사진 2매
4.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학생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제 8 조(선거운동) ①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후 입후보자의 합동의견 발표회를 갖게 한다.

②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0조(투표) ①선거권자는 투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③투표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개표) 개표는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1조의 1(무효표) 다음의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것
- ②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아니한 것
- ③어느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④둘 이상의란에 기표를 한 것
- ⑤어느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⑥기표 이외에 다른 표시가 있는 것

제12조(당선인)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벌칙) 위원회는 선거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①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 ②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③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 ④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⑤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부 칙 (1989. 6. 1.제 81호)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9학년도 최초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일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992. 6.27. 제115호)

본 시행세칙은 199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30. 제279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26. 제399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4. 제501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1. 제541호)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